



제 418국회 (정 기 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290호)

2024.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2
2. 개정안 부칙	13
[참고자료]	15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정부 제출
2. 제 출 일 : 2024. 7. 26.
3. 회 부 일 : 2024. 7.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업 면허·허가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생략)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조성금) ①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이하 “조성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삭제>
1.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	

- 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
2. 「수산업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 면허의 연장허가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4.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5.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6.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8.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9.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행위 허가를 받은 자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성금을 면제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

· 제15조 또는 제104조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 어촌계 또는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2.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3.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 중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 ·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신고한 자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설비의 설치 및 신 · 재생에너지발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

용·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종류별로 일정한 면적 또는 일정한 어선톤수 미만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

③ 행정관청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조성금의 부과·징수의 대상이 된 자가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과할 조성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에 따른 면적 또는 어선톤수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조성금을 부과할 때에는 초과량 및 부수어획량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조성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는 조성금의 산정기준·감액기준·부과절차 및 부과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성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성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⑦ 조성금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나. 검토의견

□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면허 및 허가, 공유수면 준설과 골재채취 등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어업인 등에게 수산자원조성사업¹⁾의 재원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부담금²⁾의 한 종류로, 2023년 기준 5,024건을 대상으로 7억 6,600만원이 부과되어, 4,754건 7억 3,700만원이 징수되었음(징수율 96.3%).

[수산자원조성금의 연도별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부 과		징 수		차 이*		징수율 (B/A)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2023	5024	766	4754	737	270	29	96.3
2022	2150	1101	2104	1084	46	17	98.5
2021	1102	647	1087	635	15	12	98.1
2020	890	745	896	745	△6	0	100.0
2019	1739	554	1747	549	△8	5	99.1

* 주: 부과연도(연말)와 징수연도(연초) 및 미납액 등에 따른 차이 발생

* 자료: 해양수산부

1)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수산자원조성사업) ① 행정관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하 “수산자원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3. 바다숲의 설치사업
 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5.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6.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 ④ (생략)

2) 반대급부 없이 특정한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조세 외에 공공주체가 부과하는 금전지급의무 (「부담금관리법」 제2조)

[수산자원조성금의 근거, 개요 및 대상 등³⁾]

◇ 법적 근거	
○ 법 률: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근거 마련 ○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30조: 수산자원조성금의 면제, 조성금의 부과기준·감액기준, 부과 및 납부방법, 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대장의 기록·관리 ○ 시행규칙: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조성금의 납부고지서 등	
◇ 부과 목적	
○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1항)	
◇ 부과 대상 및 납부의무자	
부과요건 또는 부과대상	납부의무자
○ 「수산업법」 제8조의 어업면허를 받은자 ○ 「수산업법」 제14조의 어업면허 연장허가를 받은 자 ○ 「수산업법」 제41조·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 또는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 제3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명령대상에서 제외된 자 ○ 제38조제2항에 따른 배분량을초과하여 어획한 자 ○ 제39조제3항에 따른 부수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 제5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중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받아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를 버리는 장소의 조성,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채광 행위허가를 받은 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어업인 등 수혜자

* 자료: 기획재정부(「2024년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 2023.9.)

□ 최근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중 국민 또는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이

3) 수산자원조성금의 세부 내용 및 정수실적은 [참고자료1·2] 참조

존속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총 91개의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통해 부담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과목적-대상 간 관련성이 미흡한 부담금을 정비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① 국민체감부담 완화(8개 부담금), ② 기업경제활동 촉진(11개 부담금), ③ 기타 여건변화, 실효성 미흡 등(13개 부담금)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내용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년 3월 27일)’을 발표한 바 있음.

[정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단위: 억 원)

유형① : 국민 체감 부담 완화 (8개 부담금 폐지·감면)			
*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요금 인하 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정비			
부담금명	소관부처	정비방안	결감액 (연간환산)
전력기금부담금	산업부	단계적 효율인하 * '25년 7월까지 현행 대비 약 30% 인하	9,000
출국납부금	외교부 문체부	(외교부) 폐지 (문체부) 납부액인하, 면제대상확대 * 4천원 인하(1.1→0.7만원), * 면제대상 확대(2세→12세 미만)	1,754
영화상영관입장권 부과금	문체부	폐 지	294
국제교류기여금	외교부	복수여권 3천원 인하, 단수여권·여행증명서 면제	145
석유수입부과금	산업부	천연가스(LNG) 수입부담금 30%수준 인하	1,516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국토부	부과요율 50% 인하	174
수산자원조성금	해수부	폐 지	8
유형② : 기업경제활동 촉진 (11개 부담금 폐지·감면)			
*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 정비			
부담금명	소관부처	정비방안	결감액 (연간환산)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부	폐 지	3,598
개발부담금	국토부	'24년 한시 감면(수도권 50%, 非수도권 면제)	3,082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부	경유차 소유자 중 영세 자영업자 대상 50% 인하	133

폐기물처분부담금	환경부	중소기업 감면기준 적용대상 확대 * 연매출 600→1,000억원	11
특정물질 제조·수입부담금	산업부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요율 인하	6
<u>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u>	해수부	폐 지	53
농지부전부담금	농림부	비 농업진흥지역 부과요율 인하 * 개별공시지가 30 → 20%	3,540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림청	면제대상 확대 등(국가산단, 물류단지 등)	155
장애인고용부담금	고용부	연계고용 감면한도 상향, 표준사업장 규제 완화	529
폐기물부담금	환경부	부과대상에서 껌 제외	31
방제분담금	해수부	부과요율 인하 * 내항선 △50%, 외항선·기름저장시설 △10%	31
유형③ : 기타 여건 변화, 실효성 미흡 등 (13개 부담금 폐지·감면) *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인한 정책목적 달성, 부과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타당성이 낮은 부담금 폐지			
부담금 명 및 소관부처			견감액 (연간환산)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기재부), 수질개선부담금(환경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산업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부담금(문체부),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문체부), 도로법 원인자부담금(국토부), 시설부담금(산업단지)(국토부), 시설부담금(물류단지)(국토부),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국토부), 지자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부담금(행안부),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환경부),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산업부), <u>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해수부)</u> 등 13개 부담금 폐지			약 247

* 자료: 기획재정부(「2024년도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 2023.9.) 등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정부는 91개의 부담금을 69개로 축소하기로 하고 2024년 9월까지 관련 개정안 23건⁴⁾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은 3건으로, 「수산자원관리법」(수산자원조성금 폐지), 「해양심층수법」(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폐지), 「해운법」(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 폐지)의 개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4)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2024년 3월 27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 관련 법률안 목록은 [참고자료3] 참조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반영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어업인 등에게 부여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고, 그에 맞추어 관련 조문 등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정비 유형은 ‘국민 체감 부담 완화’에 해당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수산자원조성금의 징수액(2023년도 7억 3,700만원⁵⁾)은 ‘수산자원조성사업’ 전체 예산(2023년 기준 771억 3,200만원) 대비 약 1% 수준으로 조성금의 기여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해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고유가, 전기료 인상 등으로 인해 납부의무자인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어업인들의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수산자원조성금은 어업활동이나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 등 수산자원 훼손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 또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부과되는 측면이 있고, 현행법에서도 소량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경비를 별도로 제출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는 조성금을 면제하거나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융통성 있는 제도운영의 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부담금을 폐지하는 대신, 어업행위 등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행위자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해 별도의 보상을

5) 2019~2023년 연 평균 징수금은 7억 5,000만원

지급하였거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 제도운영의 틀 안에서 어업인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 제37조 및 제38조제1항⁶⁾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도지사
로 하여금 어종·어업·조업수역·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해 어획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한편,

제38조제2항에서 배분량을 할당받은 어업자·어선이 이를 초과하여 어
획한 경우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수
산자원조성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여 조성
금 징수를 배분량 초과분 공제의 예외사유로 규정⁷⁾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과 같이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할 경우 배분량을 초과하
여 어획한 어업인은 초과분이 예외 없이 다음 연도 배분량에서 공제되
는 규제를 받게 되므로,

아직 일부 어종·업종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고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

6) 「수산자원관리법」 제37조(총허용어획량의 할당)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제36조제3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계획에 대하
여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이하 “배분량”이라 한다)을
결정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8조(배분량의 관리) ① 제37조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받아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자는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초과한 어획량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
도의 배분량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금액을 징수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⑤ (생략)

7) 제39조제3항에 따라, 부수어획(할당받은 어종 외의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에 대한 어획)의 경
우에도 할당된 배분량을 초과한 경우 이를 다음 해의 배분량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수산자원조
성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제38조의 내용이 준용됨.

위를 확대시킬 예정인 총허용어획량(TAC)제도의 실시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인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짐⁸⁾.

- 해양수산부는 2023년 기준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하여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향후 입법⁹⁾ 등을 거쳐 모든 어업,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

8)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배분량을 초과 어획하여 수산자원조성금을 징수한 사례는 없음.

9) 해양수산부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등의 제정·시행 후 일정기간(3년)의 준비를 거쳐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확대 실시할 계획임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안 부칙 제1조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제2조는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포함)에 따른 초과어획분의 다음연도 배분량 공제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3조는 법 시행 전에 조성금의 부과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제4조는 개정안의 입법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연도 배분량 공제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 전에 조성금을 징수한 경우 2.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부칙 제3조에 따라 조성금을 징수한 경우
제3조(조성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에 대한 조성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2조제2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9조제7항제5호”로 한다. ②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를 삭제한다.

나. 검토의견

□ 안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전에 조성금을 징수하거나, 안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후에도 조성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배분량에서 초과어획분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미 조성금이 징수된 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징수 효과를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법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음으로 안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수산자원조성금의 징수요건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조성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조성금을 부과받은 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1. 부담금 개요

□ (목적)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 원
인자 부담 등 원칙에 따라 어업인 등에게 부여 ('03.7.~)

□ (근거)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

□ (요건·대상)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등을 받은 어업인 등 수혜자

□ (산정기준) 면허, 허가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어·패류 등 양식어업: 면적(ha) × 10만원

정치망어업, 해조류 양식어업, 복합양식업: 면적(ha) × 3만원

□ (사용용도) 산란서식장, 수산종묘매입방류, 바다숲 및 인공어초 등 수산
자원조성사업에 사용

□ (부과·징수 기관)

구 분	대 상	구 분	대 상
1. 주관기관	지자체	3. 징수기관	지자체
2. 부과기관	지자체	4. 납부의무자	어업인 등 수혜자*

주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 14에 따른 수산자원조성금 부과 대상자

□ (부과·징수 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

구분	'18	'19	'20	'21	'22	'23	'24계획
부과(A)	720	554	745	647	1,101	766	780
징수(B)	710	555	745	635	1,084	737	-
징수율(B/A)	98.6	100.2	100	98.1	98.5	-	

참고 2

수산자원조성금 징수실적 및 수산자원조성사업 예산현황

□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부과		징수		차이 ^{주1)}		징수율 (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건수	금액(A-B)	
합계	67,296	23,400	65,537	22,699	1,759	701	97.0
2023	5,024	766	4,754	737	270	29	96.3
2022	2,150	1,101	2,104	1,084	46	17	98.5
2021	1,102	647	1,087	635	15	12	98.1
2020	890	745	896	745	△6	0	100.0
2019	1,739	554	1,747	549	△8	5	99.1
2018	5,589	953	5,171	905	418	48	95.0
2017	2,369	943	2,337	937	32	6	99.4
2016	982	550	968	527	14	23	95.8
2015	1,551	1,044	1,563	1,015	△12	29	97.2
2014이전	45,900	16,097	44,910	15,565	990	532	96.7

주1) 부과년도(연말)와 징수년도(연초) 및 미납액 등에 따른 부과·징수 차 발생

자료: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자체 예산

(단위 : 백만원)

지자체	'22년			'23년		
	사업비 (A)	부담금 (B)	대비 (B/A)	사업비 (A)	부담금 (B)	대비 (B/A)
합계	91,590	1,083.7	1.2%	77,132	737.2	0.9%
부산	2,043	86.3	4.2%	1,544	9.8	0.6%
인천	6,821	16.7	0.2%	6,482	17	0.3%
울산	1,455	3.7	0.3%	1,410	6.3	0.4%
경기	8,953	8.4	0.1%	5,877	10.8	0.2%
강원	7,630	26	0.3%	9,023	19	0.2%
충북	1,146	-	-	1,433	-	-
충남	8,562	61.2	0.7%	7,565	51.9	0.7%
전북	8,044	21.7	0.3%	7,665	17.9	0.2%
전남	12,419	328	2.6%	10,632	313	2.9%
경북	12,929	102.4	0.8%	7,772	44.2	0.6%
경남	9,386	230.3	2.5%	9,129	62.3	0.7%
제주	12,202	199	1.6%	13,482	185	1.4%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 3

부담금 폐지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24.9월)

연번	부담금	부처	법률	주요 내용
1	학교용지부담금	교육	학교용지법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2	출국납부금	외교	국제질병퇴치기금법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
3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행안	지방자치법	수익자분담금 폐지
4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문체	국민체육진흥법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
5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문체	영화비디오법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6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문체	관광진흥법	관광지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폐지
7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문체	관광진흥법	관광지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 폐지
8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산업	광업법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폐지
9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산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건설비용 부담금 폐지
10	수질개선부담금	환경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목적 및 사용 용도가 유사한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
11	수익자부담금(댐건설관리법)	환경	댐건설관리법	수익자부담금 폐지
12	원인자부담금	국토	도로법	원인자부담금 폐지
13	시설부담금(물류단지)	국토	물류시설법	물류단지 시설부담금 폐지
14	시설부담금(산업단지)	국토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시설부담금 폐지
15	공공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국토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시설 설치비용부담금 폐지
16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기재 복지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
17	수산자원조성금	해수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조성금 폐지
18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해수	해양심층수법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폐지
19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해수	해운법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
20	폐지 부담금 전반	기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정비방안(3.27)에 따른 18개 폐지 부담금과 이와 별도로 정비 추진 중인 4개 부담금을 포함하여 별표 개정 *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전기 사용자 일시부담금, 전기·전자제품 회수부과금, 화재보험협회 출연금